

## 제목 : 『공과금 바로 납부 서비스 이용약관』

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『공과금 바로 납부 서비스 이용약관』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시행 예정일 : 2022.03.24

■ 개정 약관명 : 공과금 바로 납부 서비스 이용약관

■ 기존손님 적용여부 : 적용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제 1 조 서비스 개요 ~ 제 3 조 공과금 납부금액이 틀리는 경우 처리 방법 (생 략)	제 1 조 서비스 개요 ~ 제 3 조 공과금 납부금액이 틀리는 경우 처리 방법 (좌 동)	
<p>제 4 조 공과금 납부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</p> <p>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과금 납부 처리가 되지 않고 고객이 등록된 연락처나 당행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동 사실을 <u>통보합니다</u>.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'공과금 납부금액'이 '공과금 고지서 금액'보다 부족하고 그 부족액이 통장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</li> <li>2. 결제전 자금화 처리하여 납부한 미결제 타점권(자기앞 수표, 가계수표)의 부도시</li> <li>3. 공과금 고지서에 지시된 사항(수납은행, 수납가능지역, 납부기일 등)을 위반하여 투입된 공과금인 경우</li> <li>4. 공과금 고지서가 훼손되어 중요정보(수납기일, 수납금액 등)의</li> </ol>	<p>제 4 조 공과금 납부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</p> <p>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과금 납부 처리가 되지 않고 고객이 등록된 연락처나 당행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동 사실을 <u>통보하며</u>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. <u>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'공과금 납부금액'이 '공과금 고지서 금액'보다 부족하고 그 부족액이 통장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</li> <li>2. 결제전 자금화 처리하여 납부한 미결제 타점권(자기앞 수표, 가계수표)의 부도시</li> <li>3. 공과금 고지서에 지시된 사항(수납은행, 수납가능지역, 납부기일 등)을 위반하여 투입된 공과금인 경우</li> </ol>	<p>문구 수정</p> <p>약관변경</p> <p>권고에 따른</p> <p>문구 추가</p>

판독이 불가능한 경우	4. 공과금 고지서가 훼손되어 중요정보(수납기일, 수납금액 등)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	
제 5 조 공과금 납부 시점 ~ 제 6 조 준 용 (생 략)	제 5 조 공과금 납부 시점 ~ 제 6 조 준 용 (좌 동)	